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 9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·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4조)

나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, 이용대상, 이용요금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1) 운행 시간 및 지역 : 08:00부터 19:00까지, 경북 및 대구지역 한정

2) 이용대상 : 장애등급 1·2급, 장기요양등급 1·2등급, 임산부 등

3) 이용요금 :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

다.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

라. 운영관리, 수탁자의 의무, 위탁해지(안 제9조부터 11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등(별첨참조)

나. 예산조치 : 120,000천원(차량구입비 80,000천원, 운영비 40,000천원)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15. 7. 2 ~ 7. 22(20일간)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·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 다음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이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에 따른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5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제81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,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은 일일 08:00부터 19:00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운행구역·이용시간·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·서면 또는 전산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이용·예약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로 한다. 단, 도착지가 성주군 관외일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발지가 관외일 경우에는 도착지는 성주군 관내로 한다.

제6조(이용대상 및 이용제한) ①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2. 65세 이상의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 및「같은 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(장기요양 1·2등급)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3. 사고·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
4.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5.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② 군수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요금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조 및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성주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.

제8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
2.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
3.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

4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5.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운영관리)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

2.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

3.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체결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, 수탁자 선정시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

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가 시설 및 차량의 구조, 위·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신설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.

제11조(위탁의 해지)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·수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,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

3. 수탁자가 제10조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

4.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재위탁하였을 때

5.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